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19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남희 · 김현정 · 민병덕
박상혁 · 박홍배 · 이용우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자 또는 경영진의 위법 행위나 부도덕한 언행으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 하락 및 고객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나 구제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입증책임을 완화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5조의6 신설, 제37조의2제4항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다목 중 “같다)이”를 “같다) 또는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제2조제10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최근 5년간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실

- 차. 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

제11조제2항제11호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을 “가맹본부의 대표자,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배상의무”를 “배상기준, 배상절차 및 배상방법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가맹본부 등의 명성·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
2.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

③ 관리방안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
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다. ----- ----- ----- <u>같다) 또는 지배주주(「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u> ----- -----
1) <u>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u>	1) <u>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u>

2) · 3) (생략) 라. ~ 아. (생략) <u><신설></u> <u><신설></u> 11. · 12. (생략)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11. <u>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u>	<u>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u> <u>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u> <u>법률」을 위반한 경우</u> 2) · 3) (현행과 같음) 라. ~ 아. (현행과 같음) 자. <u>최근 5년간 가맹본부, 가</u> <u>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u> <u>주의 위법행위, 부도덕한</u> <u>언행 등으로 인하여 가맹</u> <u>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이</u> <u>훼손되어 손해배상이 이루</u> <u>어진 경우 해당 사실</u> 차. <u>제15조의6에 따른 관리방</u> <u>안</u> 11.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가맹본부의 대표자, 임원</u> <u>또는 지배주주</u>----- ----- ----- -----
---	---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12. · 13. (생략)

③ (생략)

<신설>

----배상기준, 배상절차 및
배상방법 등-----

12. ·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6(가맹본부 등의 명성 ·

신용 훼손 위험 관리 의무) 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
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
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
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방안(이하
“관리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임원 및 지배주주에
대한 윤리교육

2. 명성이나 신용 훼손 상황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가맹
점 사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
안

③ 관리방안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u><신설></u>	<u>가 정하여 고시한다.</u>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 가맹본부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u>----- ----- ----- -----.
④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u>	